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6. 10.(수) 총 7매(본문4, 붙임3)	
담당 부서 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주종완, 서기관 전인재, 사무관 김석원 • ☎ (044) 201-3497, 3514	
보 도 일 시	2020년 6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1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-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·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.

### 1. 추진 배경

-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\*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, 서류상 회사 증가,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.

\* 복합공사(원도급)는 종합건설, 단일공사(하도급)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건산법 제16조)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

- 이에,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,

-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·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('21년 공공공사→'22년 민간공사)으로 허용한다.
  - 다만,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,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'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.
-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,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·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·전문가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.

## 2. 입법예고 주요내용

- ①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(영 안 제19조제1항)
  - 종합·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(가이드라인)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② 종합↔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(규칙 안 제13조의4)
  - (종합건설사업자→전문공사)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(시설·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)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 - (전문건설사업자→종합공사)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.

- ③ **종합↔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**(규칙 안 부칙 제7조)
-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(최근 5년간)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.
  - \* (종합→전문) 전체 실적의 2/3 인정, (전문→종합) 원·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
- ④ **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**(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)
- 직접시공 강화 방침\*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.
  - \*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: 50억 원 미만 → 70억 원 미만('19.3월)
- ⑤ **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**(규칙 안 제23조제10항)
- 종합·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, 원·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.
  - \*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% 인정
- ⑥ **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**(규칙 안 제13조의3)
-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.
- ⑦ **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**(영 안 제34조의5, 규칙 안 제28조제6항)
-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, 대상사업도 5천만 원→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.

\* 「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」(‘20.5.15 일자리위원회)

-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(40일)이고, 관계기관 협의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
### 3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40년간 이어온 종합·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,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 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”이라고 예상하며,
  - “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“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, 주력분야 공시제,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(☎ 044-201-35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 시행령 개정안**

- (발주가이드라인)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
- (임금직불제 적용기관 확대)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,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으로 확대
- (하도급 제한적 허용)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기술·특허공법·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100분의 20이내로 하도급 허용
- (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) 「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,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
- (기타) 건설산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,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평가를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

**2 시행규칙 개정안**

- (종합↔전문 간 상대시장 진입시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)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·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
  -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(최근 5년간)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 적용
    - \* (종합→전문) 전체 실적의 2/3 인정, (전문→종합) 원·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
- (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) 종합·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, 원·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
  - \* (종합→전문) 전문공사 하도급하는 경우 1/2인정, (전문→종합)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 관리 등을 하는 경우 1/2 인정
- (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)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
- (기타) 임금직불제 적용대상공사 확대(5천만원→3천만원), 가설기자재(비계, 동바리, 거푸집) 대여대금 보호,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,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 등

## 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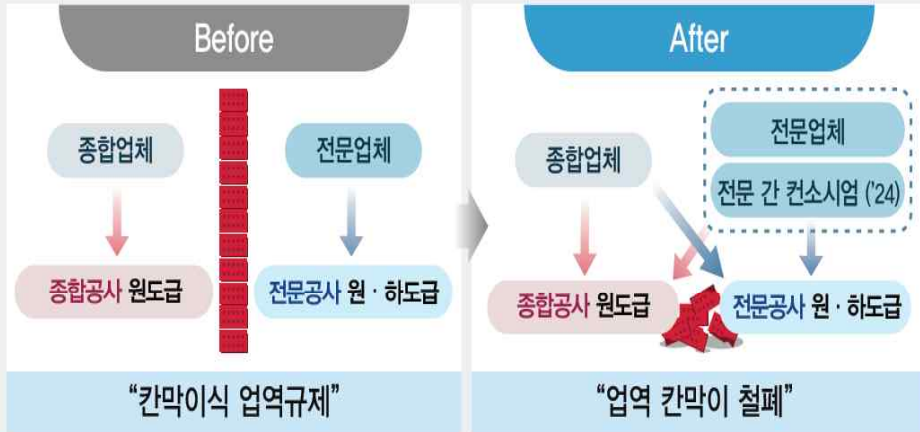
## 「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」 주요내용

- ① (개편원칙)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·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
  -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·전문업체가 상호 공사(종합↔전문)의 원·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(건설법 제16조 개정)
- ② (전문업체→종합공사)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
  - \*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'24년부터 허용
- ③ (종합업체→전문공사)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\*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·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,
  - \* (토목) 도로, 항만, 교량, 철도, 댐, 하천 등 / (건축) 건축법상 건축물
  -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\*은 금지
    - \* 여러 개의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
  -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(전문업체 중 약40%)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'24년부터 허용
- ④ (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) 종합↔전문시장 진출시,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
  - (등록기준 보완) 입찰등록 마감일 전(수의계약: 계약 前)에 기술자, 자본금,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\*
    - \*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 필요
  - ⇒ 신규 고용(기술자), 신규 투자(장비)를 전제로 상대 업역 진출 원칙
  - (직접시공 원칙) 상대 공사를 도급할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, 제한적 예외\* 허용
    - ⇒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제고

**업역**

**> 종합·전문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**

\* 종합공사: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시설물 시공 (ex. 토목, 건축 등) / 전문공사: 시설물의 일부 혹은 전문분야 시공 (ex. 실내건축, 도장, 토공 등)



**기대효과**

- “소비자 선택권 확대”
- “직접시공 확대”
- “상호경쟁 촉진”

**1 신규고용·투자 확대**

→ 상호 등록기준 충족

**보완방안**

**2 영세업체 보호**

→ 10억 미만 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제한 등

**추진단계**



※ 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(‘18.6) 발표자료